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1.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 (개정).....2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3
3.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3
4.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4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5
6. 공동주택관리법 (개정).....5
7. 지방공기업법 (개정).....6
8. 희귀질환관리법 (개정).....6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7

1.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8
2.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9
3.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10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1

1. 양양군수 주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관련 (강원 양양)....12
2.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차령 지정 관련 (경기 부천)....14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관련 (충남 홍성)....17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 [일부개정 '23. 11. 28. 시행 '23. 12. 1.]

소관부서 :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 [일부개정 '23. 12. 5. 시행 '23. 12. 5.]

소관부서 :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 044-203-664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당해 연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 경비를 보조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3 [일부개정 '23. 12. 12. 시행 '23. 12. 12.]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44-203-28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478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발굴·육성·교육 및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줄어든 이 영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4 [일부개정 '23. 12. 12. 시행 '23. 12. 12.]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의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확대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며, 국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율을 인하하고,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3. 12. 12. 시행 '23. 12. 12.]

소관부서 :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관리과), 044-200-54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외국인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대상에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는 한편,
-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에 대한 일반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3. 6. 13. 시행 '23. 12. 14.]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23. 6. 13. 시행 '23. 12. 14.]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과), 044-205-398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인 공사·공단의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8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23. 12. 26. 시행 '23. 12. 26.]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결일 '23. 11. 28.]

■ 제정이유

이웃간 주차 시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요즘 주차장에 ‘공유’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불법 주·정차 감소 및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차공유계획 수립 등(제5조)
- 나.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제6조)
- 다.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제7조)
- 라. 구·군 지원(제8조)
- 마. 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제9조)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

[의결일 '23. 11. 28.]

제정이유

야간관광 진흥을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야간관광”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5조).
- 다.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야간관광 시설 기반 조성 등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라.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7조).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의결일 '23. 11. 21.]

제정이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 나. 공예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다.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제5조)
- 라. 세종특별자치시 우수공예품 선정, 선정 취소, 우대 및 인증서 교부등에 관한 사항(제6조~제9조)
-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제10조)
- 바. 세종특별자치시 공예품대전 개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양양군이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수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등 관련]

[의견23-041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양양군이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수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를, 같은 항 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양양군이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수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양양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3호 및 별표 3의 1. ③ 예산편성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양군수가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6. 9. 의견제시 21-0131 참조).

다만 양양군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양양군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가한 사람을 실비보상의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양군이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수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364] 경기도 부천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 본문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단서에서는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이나 행정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대하여 조례에서는 그 차령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수가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409] 충청남도 홍성군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홍성군수가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홍성군
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
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홍성군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홍성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
인안전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는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제1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제2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제3호),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4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홍성군수가 이와 별도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먼저, 홍성군수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사무가 홍성군의 소관 사무인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4호너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홍성군조례안 제3조에서 홍성군수는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홍성군수가 홍성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별도로 홍성군수가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홍성군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법제처 2009. 5. 22. 회신 09-0110 해석례 참조; 법제처 2017. 4. 3. 의견제시 17-0093 참조).

그렇다면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취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홍성군조례안의 내용이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조례안에 홍성군수가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